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452호 2018. 7. 11. (수)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8-721호 정선군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4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13, FAX:560-2592)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8-721호

정선군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7월 4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17. 시행) 개정에 따른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외부강의 신고 보완기간 및 사례금 상한액 조정 내용을 반영하고
- 나. 「공무원 행동강령」(2018. 4.17. 시행) 개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등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변경: 「정선군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규칙」 → 「정선군 공무원 행동강령」
- 나.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 1)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안 제5조)
 - 2) 고위공직자(군수)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6조)
 - 3)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안 제7조)
 - 4) 가족 채용 제한(안 제8조)
 - 5)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9조)
 - 6)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안 제10조)
 - 7) 알선·청탁 등의 금지(안 제17조)
 - 8)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안 제18조)

- 9)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안 제24조)
- 10)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가액 조정(안 별표 1)
- 11)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조정: 40만원 (안 별표 2)

3. 입법예고기간: 2018. 7. 4. ~ 2018. 7. 24.

4. 전부개정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기획감사실)
- 전 화: 033-560-2218
- 팩 스: 033-560-2592
- 이 메 일: mermaid@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